

KHV 이사회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KH바텍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이사회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감사의 출석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-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주주총회의 소집
- (2)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재무제표의 승인
- (4)정관의 변경
- (5)자본의 감소
- (6)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수
- (8)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0)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2)주식배당 결정
- (13)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이사·감사의 보수총액
- (15)최대주주 등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
- (16)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사업계획 수립
- (3)신규사업 진출
- (4)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6)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8)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9)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- (10)자회사(해외법인 포함),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, 기타 중요시설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1)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2)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3)직전연도 매출액의 5%이상의 계열사간 거래(개별재무제표 기준)

3.재무에 관한 사항

(1)투자에 관한 사항

- 건당 또는 일련의 투자금액이 직전분기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는 신규 및 증설 투자
- 위 항목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신규 및 증설 투자에 대한 기존 투자승인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건당 또는 일련의 추가 자본적 지출

(2)중요한 계약의 체결

- 순지불 총액이 미화 1,000 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

(3)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
-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직전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5%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포함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건당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직전분기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% 상당액을 초과하는 타회사의 주식 및 만기 1년 초과 기타 유가증권(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은 제외)의 취득 또는 처분

(4)차입에 관한 사항

- 건당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는 장기(만기 1년초과) 차입계약의 체결

(5)결손의 처분

(6)신주의 발행

(7)사채(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)의 발행

(8)준비금의 자본전입

(9)분기배당

(10)다액의 보증행위

- 건당 규모가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는 보증행위

(11)다액의 담보제공

- 채권최고액이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5%를 초과하는 담보의 제공

(12)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
4.이사에 관한 사항

(1)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

(2)상근이사 및 집행임원의 타회사 임직원 겸임에 관한 사항

5.기타

(1)직전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5% 상당액을 초과하는 중요한 소송의 제기

(2)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3)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
(4)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지정

(5)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- 3.매월 결산 후 재무제표 및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
- 4.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0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- 1.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2.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.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4.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(권한의 위임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3 조 (의사록)

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 (부속실 등)

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사외이사)

사외이사가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